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6. 24.

발의자 : 임종성 · 김철민 · 소병훈

안호영 · 김영진 · 강훈식

윤관석 · 이규희 · 조정식

신창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함)에서 측량, 탐사, 감시, 소방 등에 사용하는 드론의 활용 범위 및 보유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,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제4항).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4항 중 “자는”을 “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(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을 말한다)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 행장치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하려는 <u>자는</u>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.</p>	<p>제70조(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</u> <u>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</u> 등(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을 말한다)은-- ----- -----.</p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